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 5. 17 선고 2022나11261 판결 [(울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 5. 17 선고 2022나11261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0가합176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재

피고, 피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준

변론 종결2023. 4. 19.

판결 선고2023. 5. 17.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0가합1766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 사이에 2020. 8. 3. 체결된 증여계약을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20. 8.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8. 3. 접수 제56305호로 마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제1심에서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B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B 사이의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그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분리·확정된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 및 '3.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 B"를 "B"로, "피고들"을 "피고 및 B"로 각 일괄해서 고친다.
- 9쪽 아래에서 3행 "1995. 1. 13."을 "1994. 1. 13.경"으로 고친다.
- 11쪽 아래에서 5행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 B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의 전부를 피고에게 증여하지는 않았고, 그 중 절반인 이 사건 아파트와 임야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증여가 이루어진 점, △ B가 개인회생 신청 당시 특정하였던 적극재산 내역들은 그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피고의 역할이 상당

부분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고, B 소유 명의의 전체 부동산들의 시세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재산분할을 한 것이 피고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B에게 현저히 불리한 정도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그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216,000,000원, 근저당권자 Q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을 그대로 승계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¹⁾에 대한 변제 의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증여로 이득만을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B의 이 사건 증여행위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정도의 과도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방응환

판사반병동

판사유정우

별지

1)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Q 주식회사의 대출금 177,825,000원의 상환채무로 보인다.